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 다 음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규정(제2조 제11호 아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의무규정(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제4항 및 제5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거부시 처벌하는 규정(제17조 제3항),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강제규정(제1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3),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보관의무 규정(개정안 제15조의2 제5항, 제20조 제1항)을 각 삭제한다.

#### 이 유

##### I. 검토배경

현재 국회에는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사법위원회 대안(이하 ‘대안’이라 함)이 계류 중인데 동 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검토과정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 2) 과도한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 3) 통신제한조치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 4)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9조의2)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제13조의3)의 예외 부분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어 법안 개정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여기에서는 대안의 인권 관련성을 검토한다.

## II. 법안의 내용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김정훈 의원 등 117인	2411	2005. 8.17.(2005. 8.18)	제256회(정기회) 제1차 2005. 9. 6.
김영선 의원 등 10인	2593	2005. 9. 9.(2005. 9.12)	제256회(정기회)제15차 2005.11.22.
최용규 의원 등 13인	3132	2005.10.31.(2005.11. 2)	제256회(정기회)제15차 2005.11.22.
김충환 의원 등 10인	3323	2005.11.11.(2005.11.14)	제258회(임시회) 제5차 2006. 2.16.
양승조 의원 등 17인	3329	2005.11.11.(2005.11.14)	제258회(임시회) 제5차 2006. 2.16.
정형근 의원 등 26인	3378	2005.11.17.(2005.11.18)	제258회(임시회) 제5차 2006. 2.16.
박찬숙 의원 등 10인	4166	2006. 4. 3.(2005. 4. 4)	제259회(임시회) 제9차2006. 4.21.

나.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07. 6. 22.)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 하되,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 제11호 아목 신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외에 통신사실 확

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기술유출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안 제5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신설)

(1)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조의2 제5항 및 제15조 제4항)

(1)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제13조의4)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이를 집행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함

사.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제17조 제1항 제7호 및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의 신설 및 조정(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제20조 신설)

(1)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는 과태료에 처함

(2) 누락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구분 조정함

(3) 법인의 행위와 구성원의 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함

#### 4.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과 수정이유

가. 수정안의 제안 배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그 내용이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꾸

준히 지적하였고, 법사위 대안에 대한 비판 내지는 보완으로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변재일 의원의 수정안과 유승희 의원의 수정안에 나오게 되었음

나. 변재일 의원의 수정안(2007. 7. 2.자 발의)의 수정이유

법사위 대안은 정부가 사회 통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의 평화로운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현행법은 감청이 이루어지고 난 뒤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뒤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통지의 미 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에서 남용 및 인권침해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고 난 뒤에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가 이중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특히 통신사업자의 경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다. 유승희 의원의 수정안(2007. 7. 2.자 발의)의 수정이유

대안은 기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추적정보(GPS)를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설비를 국비로 지원 설비케 하는 한편, 전화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기록 등 통신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영장

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음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국민들도 감청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대안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것임

모든 이동전화기 감청 가능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높은 수준의 통신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첨단산업기술이나 고도의 경영비밀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이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한 통신회사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Ⅲ. 검토기준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IV. 판단

##### 1. 개요

대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증거사용금지,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양벌규정의 도입 등 부분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추적정보(GPS)를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 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 2.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의 추가

대안은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였는데, 위치정보는 말 그대로 위치에 대한 정보로서 휴대용 개인단말기가 표시하고 있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GPS정보는 현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되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정보와는 구분되는 것인데,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정보는 현재 단말기가 가장 근접한 기지국과 휴대전화 단말기사이의 무선통신을 위해 마련된 무선통신분할망의 cell ID(Location Label)로써 이는 대략 3-5km정도의 단위로 분할되어 있다.

이에 비해 GPS는 본래 높은 위치정확도가 요구되는 항공기의 자동착륙 시스템, 측지, 이동체의 자세결정 및 정밀측위 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므로 그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보정기술이 정교하고, GPS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단말기에서 위치를 계산하는 GPS시스템의 측정오차는 대략 5m 정도로 극히 작은 것이 특징이다.

대안에 의하면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 저장된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해 필요할 경우 근처 5m의 거리까지 정확히 추적해 내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되고, 장래 다가 올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위치정보를 동시에 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수집 가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와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 또한 RFID와 USN의 경우에는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나 실시간의 정황정보가 주를 이룰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편입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개인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의무 신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005. 5. 26.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대안은 이를 수사기관이 30일 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실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30일이나 더 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제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 통지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지를 통하여 보호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지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담시키기 보다는 보다는 수사기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해결책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에 가입자로부터 자료제공에 대한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한다면 통지제도의 취지를 크게 제

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3조의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은 현행법의 내용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등을 규정한 제13조의4 제4항, 제5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므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거부에 대한 처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외에 자료 보유자가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형벌 조항은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매한 개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자료 보유자인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함이 마땅하다.

#### 5.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강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동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휴대전화의 감청이 가능했으나, 휴대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내밀한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이고, 손쉽게 추적되기도 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었다.

외국에서 선불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국내 모든 휴대전화는 매 개인별로 실명으로 개설되기에 그 사용자가 1인으로 특정되고, 또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화자의 위치가 드러나며,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경우는 화상까지도 드러나게 되어, 결국 휴대전화의 감청은 피감청자의 통화내용 뿐 아니라 금융업무, 쇼핑, 인터넷 이용 기타 정보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감청 대상이 '인터넷 전화', '전자우편'이나 '메신저'까지 확장되게 되면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실상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과 확대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더구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시적, 일상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또한 국민들도 감청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모든 이동전화의 감청 가능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높은 수준의 통신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첨단산업기술이나 고도의 경영비밀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이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고, 또한 통

신회사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통신회사를 해외의 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모든 통화를 암호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의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거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두지 않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장비 등의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법이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은 대단히 심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시적, 일상적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의무

현행법은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대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

실 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대안은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고,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범죄 예비단계도 아닌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대상 범죄의 한정이 없고, 요건도 단순히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도 요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어떠한 범죄를 할 예정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예비상태 정도의 혐의자도 못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시 그 목적과 무관한 개인을 포함하는 등의 변칙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항상 염려스러운 것이고, 정부가 기자의 전화통화 내역을 조사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특히 현행 시행령 제21조에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비밀의 대상이며, 지난 2005년 국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특히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서비스이용사실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을 안겨줄 여지가 있고, 보관되어야 할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폭넓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법 제2조 제11호 마목).

여기서 로그기록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일시나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 뿐 아니라 접근한 파일 이름, 파일의 용량, 이용자가 쓰는 브라우저의 종류 등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 대개가 보관되고, 접근한 파일 이름을 분석하면 어떤 게시판을 읽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그기록은 서버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설정하기에 따라 보관범위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자 임의대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와 달리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낳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1년 '이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통신비밀의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1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자들은 관련 자료를 '최소' 1년간 보관하고 그 이상의 기간도 보관하면서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포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률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환경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여 온 사업자에게까지 강제적으로 보관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이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개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자기 업무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조요청이지 강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보관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 결 론

개정안의 내용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대안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2007. 12. 17.

위원장	안경환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위원	최경숙
위원	최금숙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